



사법행정 주요사항 보고

2020. 4.

운영지원단

1. 법원조직법 등 개정

가. 경과

▣ 2020. 3. 5.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 가결

-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
나. 법원조직법 개정사항

1) 주요 내용

▣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(제27조제2항 및 제3항 등)

- 기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 규정에 의함
- 고등법원(특허법원) 부의 재판장은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하게 됨
- 고등법원 부장판사와는 달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그대로 유지

▣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추가(제43조)

- 정당의 당원 및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▣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전환(제71조의2 신설)

- 윤리감사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정함



-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정무직으로 임용하는 등 윤리감사관 제도 개선
 -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,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정무직으로 임용하는 등 윤리감사관 제도 개선(제71조의2 신설)

2) 시행시기 등

■ 시행시기

-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. 다만, 제43조의 개정규정(정당 당원 신분 상실 3년 미경과 등 추가된 법관 임용 결격사유)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■ 적용례

- 제43조의 개정규정(추가된 법관 임용 결격사유)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

■ 경과조치

-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

다.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

1) 주요 내용

-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(관할: 인천 계양구, 서구, 강화군) 설치
-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,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,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,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,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

2) 시행시기

- 2025년 3월 1일

라. 현재 진행 상황

-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 중



2.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대표자 선출

가. 경과

- 2019. 12. 2.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「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」 개정 건의

- 전국법관대표회의 건의 내용을 고려한 「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」 개정

<주요 내용>

법원별로 선출할 대표자 총원을 추가하고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'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' 및 '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'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

- 2020. 2. 대법관 회의 의결

- 2020. 3. 말까지 규칙에 따라 각급 법원 법관 대표자 선출

나. 2020년 선출된 전국 법원 법관 대표

- 총 64개 법원(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 포함) 법관 대표자 125명

- 구체적 명단 별지 참조
- 별지: [비공개 결정으로 삭제]